

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서남권 거점형 서울생활문화센터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
- 나. 시설개요
 - 시설명: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
 - 소재지: 구로구 새말로 117-21 일대(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1층)
 - 시설규모: 752.9 m^2 (다목적홀A/B, 음악실, 미술실, 무용실2, 세미나실)
 - 개관일: 2012. 6. 1.
- 다. 위탁기간: 3년(2023. 1. 1. ~ 2025. 12. 31.)
- 라. 민간위탁금(안): 429백만원 (2023년 기준)
- 마. 위탁사무
 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 -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

-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기획·교육·보급·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은 신도림역 3번 출구 지하에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공간으로,

-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고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을 통한 시민과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,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·공연 프로그램 기획 등 추진 중임

-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, 생활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아. 심의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
-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

- 2023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유영민 (☎ 2133-2536)

[지역문화진흥법]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

-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